■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[별표 5]

# 상 점 기 준 표(제56조 관련)

<table>
<tr><th colspan="2">항 목</th><th>점수</th></tr>
<tr><td rowspan="7">수범 사항</td><td>○ 재해・안전사고 예방 등 구체적 공로가 인정되는 자<br>* 관서 실습 중, 업무 시 상기 사항 수행은 제외한다.<br>* 관서 실습 중, 업무 외의 상기 사항 수행으로 언론보도 시 인정, 언론 미보도 시에는 생활지도위원회 의결을 요한다.</td><td>8</td></tr>
<tr><td>○ 범죄예방・범인 검거・인명구조・응급상황 구호 등으로 구체적 공로가 인정되는 자<br>* 관서 실습 중 업무 시, 단순신고의 경우 상기 사항 수행은 제외한다.<br>* 관서 실습 중, 업무 외의 상기 사항 수행으로 언론보도 시 인정, 언론 미보도 시에는 생활지도위원회 의결을 요한다.</td><td>5</td></tr>
<tr><td>○ 모범학생으로 선발된 자</td><td>3</td></tr>
<tr><td>○ 해양경찰청장 급 이상 표창 수상(교육 기간 中 )<br>* 졸업 시 상장 수여는 제외</td><td>5</td></tr>
<tr><td>○ 교육원장, 지방해양경찰청장급 표창 수상(교육 기간 中)<br>* 졸업 시 상장 수여는 제외</td><td>3</td></tr>
<tr><td>○ 해양경찰서장 급 표창 수상(교육 기간 中)<br>* 졸업 시 상장 수여는 제외</td><td>2</td></tr>
<tr><td>○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논문, 학술, 체육 등의 대회에서 입상(교육 기간 中)<br>* 증빙자료(상장, 메달 등) 근거로 상점 부여하며 동일대회 여러 입상은 1건으로 처리<br>* 공공기관 소속연맹이 주최한 경우 시·도지사 이상인 경우 인정</td><td>2<br>(최대5점)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학생자치 활동 유공</td><td>○ 총학생장・학생장・행정 직책을 맡아 수행한 자<br>* 전체 교육기간 12주 미만 3점, 12주 ~ 24주 미만 5점, 24주 이상 10점</td><td>3~10</td></tr>
<tr><td>○ 학생 방송편집국, 시설장, 체육장, 학과 출장 지원(드럼), 응급의료단, 도서관 봉사 임무 수행자 등 봉사 업무 수행자</td><td>6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봉사활동</td><td>○ 교육원 내 봉사활동(일과 후, 공휴일)</td><td>1</td></tr>
<tr><td>○ 교육원 외 봉사활동(외출, 외박, 방학)
<table>
<tr><th>점수</th><th>1점</th><th>2점</th><th>3점</th><th>4점</th><th>5점</th></tr>
<tr><td>시간</td><td>4 ~ 7시간</td><td>8 ~<br>14시간</td><td>15 ~<br>21시간</td><td>22 ~<br>28시간</td><td>29시간<br>이상</td></tr>
</table>
* 인정기준 : 1365, VMS등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원장(학생과장)이 인정한 경우 (다만, 비대면 봉사활동 불인정)</td><td>1~5</td></tr>
<tr><td>○ 원내 헌혈 행사 참석, 원외 헌혈 후 헌혈증 제출 및 기부(전혈 및 혈장)<br>* 단 혈장헌혈의 경우 3회당 1점</td><td>1<br>(최대5점)</td></tr>
<tr><td>○ 교육원 외부 헌혈 후 헌혈증 제출 및 기부(전혈)</td><td>1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교육 발전 기타</td><td>○ 교육발전 유공, 행사 지원, 기타 공로<br>* 계획서 수립, 시행하는 것에 한한다.</td><td>1~3</td></tr>
<tr><td>○ 동아리 운영 봉사자 및 참여자<br>* 동아리 운영 계획서 수립, 시행에 따른 동아리 운영 봉사자 및 지정 참여횟수에 따름</td><td>1~3</td></tr>
<tr><td>○ 선행 미담 등으로 교육원 교직원이 인정한 사항</td><td>1</td></tr>
<tr><td>○ 수업 적극 참여<br>* 개인별 1회에 한한다.</td><td>1</td></tr>
<tr><td>○ 수업 준비 지원<br>* 개인별 1회에 한한다.</td><td>1</td></tr>
</table>

* 학생자치 활동 유공 분야는 중복 가점 불가(중복 시 가장 유리한 가점 적용)
* 다만, 교육 발전 기타 항목 및 관서 실습 중 상점 부여는 객관성 및 형평성을 위하여 학생과 생활지도위원회에서 의결 할 수 있다.
* 봉사 정신 함양과 능동적인 학생 생활 유도를 위해 상점 상한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생활지도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「해양경찰교육원 평가관리규칙」에 따른다.